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고, 보호자에게 단기간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3)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다. 위탁시설 개요

- 1) 시 설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2) 위 치 : 원평동 964-329번지

3) 규 모 : 지상 1층, 연면적 342.86㎡

4) 주요시설 :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실, 화장실 등

5) 정 원 : 10명

라. 위탁사무

1) 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2) 장애인 보호, 일상생활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

3) 이용자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마. 위탁기간 : 5년(위탁개시일로부터) * 2027. 2. ~ 2032. 1.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730,000천원 * 2027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비고
730,000	596,000	72,000	62,000	

사.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부서의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3)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해당없음(신규위탁)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 비용추계의 전제

- 종사자 11명 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매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지침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인건비	596,000	607,920	620,078	632,480	645,129	3,101,607
	운영비	72,000	73,440	74,908	76,406	77,934	374,688
	관리비	62,000	63,240	64,504	65,794	67,110	322,648
	소계(b)	730,000	744,600	759,490	774,680	790,173	3,798,943

4. 재원조달 방안 (도비 20% 시비 80%)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	-	-	-	-	-
	도 비	146,000	148,920	151,898	158,034	158,035	759,789
	시 비	584,000	595,680	607,592	632,138	632,138	3,039,154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730,000	744,600	759,490	774,680	790,173	3,798,943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배은구(☎480-518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세부내역		금액(천 원)
계				730,000
사무비	인건비	○ 급여	350,000,000원×1 식	350,000
		○ 제수당	153,000,000원×1 식	153,000
		○ 퇴직금	42,000,000원×1 식	42,000
		○ 사회보험부담금	50,000,000원×1 식	50,000
		○ 기타후생경비	1,000,000원×1 식	1,000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5,000,000원×1 식	5,000
		○ 회의비	5,000,000원×1 식	5,000
	운영비	○ 여비	2,000,000원×1 식	2,000
		○ 수용비 및 수수료	8,000,000원×1 식	8,000
		○ 공공요금	24,000,000원×1 식	24,000
		○ 제세공과금	10,000,000원×1 식	10,000
		○ 차량비	10,000,000원×1 식	10,000
사업비	서비스	○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36,000,000원×1 식	36,000
		○ 수용기관경비	6,000,000원×1 식	6,000
		○ 재활사업비(프로그램 등)	20,000,000원×1 식	20,000
재산 구성비	시설 유지 관리	○ 개보수, 장비구입	5,000,000원×1 식	5,000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3,000,000원×1 식	3,000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박 연 길
	팀 장	최 선 자
	담 당 자	배 은 구 (480-5182)